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 19. 12 31)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및 학습휴가,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특별휴가(여성보건휴가) 규정 삭제 (안 제14조의2제3항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개정(신설)으로 기존 조항과 중복
  - 여성보건휴가: 매월1일(무급,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)
  - 임신검진휴가: 임신기간 내 10일(유급, 임신검진의 사유)

### 나. 특별휴가(학습휴가) 확대 (안 제14조의2제9항)

- 각급 학교 근무자와 각급 학교 외 근무자의 학습휴가 부여 일수를 통일하여 공무원에게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 부여

### 다. 특별휴가(포상휴가) 신설 (안 제14조의2제10항)

-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 (직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)

### 라. [별표3] 경조사별 휴가 신설 및 확대 (안 제14조의2제1항 관련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
  - 배우자 출산휴가: 5일 → 10일(확대)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: 1일(신설)
-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휴가: 1일(신설)
-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사망 휴가: 2일 → 3일(확대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별첨 7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(특별휴가)
-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(인사상 우대 조치 등)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
다. 협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- 입법예고(2020. 9. 14. ~ 9. 24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
  - ※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2020. 8. 20. ~ 9. 9.) 시 제출된 의견 반영, 재입법예고 실시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(별첨 4)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(별첨 5)
- 학생인권영향평가 : 별첨 6
- 관계법규 : 별첨 7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무원은 「평생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제14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(제14조의2제1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	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u>	<u>1</u>
출산	배우자	<u>10</u>
	<u>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</u>	<u>1</u>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<u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u>	<u>3</u>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양	본인	20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의2(특별휴가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</p> <p>④ ~ ⑧ (생략)</p> <p>⑨ 「<u>평생교육법</u>」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학습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:</u> <u>연 4일 이내</u></p> <p>2. <u>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:</u> <u>연 2일 이내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4조의2(특별휴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④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공무원은 「<u>평생교육법</u>」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⑩ <u>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(제14조의2제1항 관련)			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(제14조의2제1항 관련)		
구분	대 상	일수	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	결혼	본인	5
	자녀	1		자녀	1
출산	배우자	5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출산	배우자	10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	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	1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1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	입양	본인		20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
			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			입양	본인

## 【별첨 2】

[별지 제1호 서식]

#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

#### 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최원석(02-399-9239)

【별첨 3】

< 별지 제5호 서식 >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	○ 의견 없음	

【별첨 4】

[별지 제3호서식]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<b>자치법규명</b>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<b>평가담당</b>	감사관	행정6급	이지은
<b>입안주관부서</b>	총무과	통보일	2020.9.7.
<b>관련조문</b>	<b>검토결과</b>		<b>조치사항</b>
안 제14조의2 안 [별표3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 조례는 조직의 운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로써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</li> <li>※ 국민권익위원회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경찰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각종 복무 관련 법령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함 (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료실 2020. 4. 1. “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목록 최종”)</li> <li>- 단, 동 조례 개정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, 2020. 1. 16. 시행)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법령과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함</li> <li>- 특히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‘학습휴가’의 일수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, ‘포상휴가’에 대해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함</li> </ul>		<p><b>“참고의견”</b> (원안동의)</p>

【별첨 5】

<b>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</b>				
관리번호	2020A서울교육030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총무과		
	담당자명	최원석	전화번호	02-399-9239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정책안전기획관		
	담당자명	신지은	전화번호	02-399-3910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0년 09월 21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0년 09월 23일			
<p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0년 09월 23일</p>				

【별첨 6】

##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

<b>자치법규명</b>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		
<b>담당부서</b>	총무과	<b>담당자</b>	성 명 : 최원석 직 급 : 주무관 연락처 : 02-3999-239
<b>평가담당</b>	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	위원장 정병수	
<b>해당조항</b>	<b>검토결과</b>		<b>검토결과</b>
전반	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복무 사항 개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<b>원안 동의</b> 의견을 제출함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권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단권고
<b>해당조항</b>	<b>참고의견</b>		
	해당 없음		

【별첨 7】

## 관계법규

### 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[시행 2020.1.16.] [대통령령 제30256호, 2019.12.24., 타법개정]

제7조의7 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의7 (특별휴가)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 <신설 2019.12.31.>

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9.12.31.>

[별표 1] 경조사 휴가 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 <개정 2019. 4.16.>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10일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
### ■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
[시행 2020.8.25.] [대통령령 제30969호, 2020. 8.25., 일부개정]

제14조 (인사상 우대 조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,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,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.

4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